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종합 보고서

진단 :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 주 최 : 국회의원 박상도 · 언론중재위원회
-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14:30~16:40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종합보고서

2016년

국회의원
곽상도·언론중재위원회

인 사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상도 국회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여러 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먼 길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가 대표발의하고 인터넷 상 새로운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언론계, 학계, 국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이 오갈 예정입니다. 심도있고 치밀한 논리를 담은 발제문을 생산해주신 발제자 두 분, 그리고 풍성한 논의의 장을 꾸려 주실 토론자와 사회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와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아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도입, 도대체 어떤 것을 구제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말씀보다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안 제3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33조의3제4항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통신사에서 취재 보도한 내용으로 경기도 모 지역 고교 육상부 여학생들이 성추행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 고등학교는 두 군데 불과한데 육상부가 있는 고교는 한 군데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특정돼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기사삭제로 합의되었으나, 통신사 기사를 전재한 타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부서관이 육상부 여고생 기숙사 들어가 성추행·절도

육군 부서관이 육상부 여고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 들어가 성추행을 하다가 코치 교사에게 붙잡혔다.

경기 경찰서는 7일 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박모(23) 하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박 하사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지역의 한 고교 기숙사 2층에 창문을 통해 침입,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17)들을 깨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서랍과 사물함을 뒤져 7만9천원이 든 여고생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 하사는 성추행 사실이 발각되자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나려고 하다가 육상부 코치 교사와 남학생들에게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하사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2층 기숙사에는 육상부원 여고생 3명이 지내고 1층에는 육상부원 남자 고교생들과 코치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두 번째는 허위기사로 확인된 언론보도가 복제·전파되어 남아 있는 사례입니다. 개정안 제3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33조의3제4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방송사가 7차례 걸쳐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사 동의도 없이 수술실에 들어갔고, 전신마취 중인 환자가 방치되도록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정보도 방송 및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잘못된 방송 내용이 담긴 복제물이 인터넷에서 검색되고 있습니다.

의료제도와 건강

의료현실 (227)

[MBN뉴스] [단독]전신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 | 의료현실
2014.09.23, 09:04
<http://blog.naver.com/wons5150/220129980295> [단독]
[변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단독]전신 마취 환자 방치시킨 위험한 압수수색
2014.09.22



파초 (wons5150)
프로필 > 쪽지 > 이웃추가 >

카테고리

- 전체 보기 (6165)
- 메르스 (442)
- 의료현실 (227)
- 의료계 소식 (179)
- 의료의 본질 (29)
- 의사노동조합 (1)
- 의사 파업 (30)
- 건강보험 (167)
- 건강심
- 건강보험 보장성 (43)
- 국고지킴 (46)
- 군인 (9)

최근댓글

다녀간 블로그

활동정보

블로그 이웃 360 명
글 보내기 0 회
포스트 스크랩 358 회

사용중인 아이템 보기

파초
마운트 커넥트 >

내가 추가한 나를 추가한

공개된 이웃이 없습니다.

내아이 파워블로그를 방문해보세요

블로그 친구 이음경 호민모음

시사랑 김경기 재로유인

파워블로그 보기

파초님 이웃의 세글보기 >

이웃으로 추가

세 번째는 위법한 보도 댓글 사례입니다. 개정안 제33조의3제2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한 방송사가 모 승무원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웃는 모습을 전하며 승무원이 항공사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고 거짓 진술한 것처럼 오인되게끔 방송해 법원으로부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보기 하단에는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댓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백작 2015-01-11 17:33:28

항공 정신병자 승무원 녀들!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많이 술을 주라고 했어?
지들이 자승자박이고 지들이 술을 많이 줘서 지들 스스로 그런 화를 불러 일으킨거고 이 소란파운게 술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안나는 상태에서 그런건데! 맨정신에서 소란파웠어? 맨정신에 그랬냐고! 왜 술을 니들이 준건데? 정신 나간 엄빠지 항공 정신병자 승무원 녀들! 가장 정신병자들은 색끼들! 기자정신은 어디다 팔아먹었니? 약발고 뉴스진행 하나?

jykim603 2015-01-13 11:00:05

주차알바했던 청년들, 힘내시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양없고 잔인한 아줌마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지만 판사를 믿을 수 없으니...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님도 이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동안 했었던 일, 계속해서 평생의 직업으로 즐겁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양심을 버리고 거짓진술한 승무원은 제발 반성하고 정의를 행하시길..

내외 귀빈 여러분!

요즘 같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기사는 검색을 통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격권 침해보도에 대해 정정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원기사는 인터넷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 검색되고 유통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잘못된 기사를 수정·보완·삭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잘못된 기사의 복제 및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구제책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언론사 등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회복 조치를 해주는 게 언론의 정도이자 디지털 시대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기사 원본을 삭제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관계가 명백히 그릇된 기사는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자는 것입니다. 또 모든 댓글을 지우자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보도와 관련된 댓글만 언론보도에 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인터넷 상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추운 날씨에도 함께 자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 기탄없는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 상 도
국회의원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입니다.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곽상도 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화된 언론기사는 포털과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로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포털의 검색기능을 통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는 잘못된 원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복제기사가 지속적으로 검색되고, 기사에 달린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인격권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이버상의 언론피해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남아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터넷에 게시된 원 기사를 바로 수정·보완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고 위법한 복제기사 및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절차를 마련,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원스톱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피해 구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부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를 맡아주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면밀하게 진단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용 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목 차

◆ 주제발표

제1주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 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1

권 오 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제2주제 :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17

문 소 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 토 론

토론내용 37

◆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53

주 제 발 표

제1주제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 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권 오 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 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권 오 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1. 서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피해 양상

법은 사회 변화를 미리 반영할 수는 없어도 변화된 사회 요소를 수용하여 발전해 왔다.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백이나 법적 구제의 사각지대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이 TV가 86.8%, 인터넷(이동형+고정형) 69.7%, 종이신문 25.4%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뉴스 이용률에서는 ‘이동형 인터넷 뉴스 이용’이 20대 89.7%, 30대 88.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¹⁾ 또한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 신청사건 가운데 62.9%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인터넷신문은 1995년 종속형인 중앙일보를 필두로 속속 등장해, 2000년에는 독립형인 오마이뉴스가 만들어졌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이들을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섭하였다. 당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86개에 불과했다. 포털의 경우,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때가 2000년이고 이를 조정·중재 대상으로 삼은 때는 2009년이다. 기존의 피해구제방법에 대한 법률보완이 누락된

1)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2) <2015 연간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6.

것이다.

침해(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의 수정, 삭제와 기사에 달린 댓글, 기사평글에 대한 구제방안은 이미 그때부터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의돼왔다. 무엇보다 중재위에서 조정신청인들의 인터넷상 기사에 대한 수정, 삭제요구도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근래에 요구의 정도가 강해 최근 5년간(2011~2015년) 인터넷기반 매체의 처리결과 중 기사가 삭제 또는 수정된 건이 26%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법제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듯 현행 언론중재법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 미디어라 할 수 있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TV 등을 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방안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한 번 보도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 일회적인 보도를 상정하여 원 보도 이후 별도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만을 언론보도 피해자의 구제방안으로 제시해왔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³⁾인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언론피해 양상이 보이고 있다. 정정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원 기사가 인터넷 곳곳에 잔존하여 그릇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언론피해의 확산과 그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보도에 한해 적용되는 새로운 권리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위법한 침해적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를 구할 수 있는 침해배제청구권이 그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이 모든 언론매체에 적용되는 권리라면,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는 인터넷기반 매체에만 적용된다. 기존 신문, 잡지나 방송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구할 수 없고 오직 인터넷을 통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신문 등을 대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위법·침해적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다면 진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

3)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전원재판부

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재위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 구제된 기사가 검색 결과에 나타날 경우 피해자가 검색사업자를 상대로 위법성이 확인된 복제 기사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검색결과가 표시되지 않도록 중재위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셋째, 중재위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정이나 삭제 등으로 구제가 확정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 간이한 절차로 중재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법한 침해적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댓글의 삭제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중재위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인터넷기반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구제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잘못된 원 보도의 전파와 검색으로 인한 피해와 위법한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까지 중재위의 조정을 통해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 각계와 국민의 인식

개정안은 국민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담고 있으나 일부 언론계와 언론학자는 개정안에 대해 불신과 우려의 시선을 쉽게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대부분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중재위의 기능과 역할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다. 개정안대로라면 중재위에서 기사의 수정이나 보완·삭제 등을 구하거나 중재위가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중재위가 기존의 ‘중재’ 역할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인터넷 댓글의 삭제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검열기구”⁴⁾가 될 것, “중재위가 심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의도”⁵⁾, “SNS게시물을 중재위가 알아서 삭

4) 최진봉, “언론중재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행위”, 노컷뉴스, 2015. 12. 3.

제”6), “기사삭제는 국제표준이 아니다”7) 등의 주장은 개정안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중재위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중재위는 언론보도 분쟁의 양당사자를 조정하는 기구로,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모든 조정은 피해자의 조정신청이 제기 된 후에야 개시되며, 기사나 기사댓글의 삭제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한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중재위가 자체적으로 명예훼손적 글을 심의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은 이미 독일에서 학설상 확립된 개념으로 판례에 의해 발전돼 왔고 영국은 최근 제정된 명예훼손법에서 명예훼손적 진술의 삭제 및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우리 대법원과 각국의 판례와 지배적인 학설을 참고,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논란이 없고 구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방안과 절차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법원에서도 2013년 대법원 판결(2010다 60950) 이후, 각 심급별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인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표 1〉 최근 우리 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용사건 현황

번호	판결번호	법원	심급	청구명	침해 유형	원고	사건 피고명	매체명	결과
1	2014나 2016492	서울 고법	2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사생활	000 외 5명	(주)조선일보사 외 1명	조선일보/ 조선닷컴	인용
2	2014나 24114	서울 고법	2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초상/ 사생활	000 외 5명	(주)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인용
3	2015카합 50147	서울 서법	1심	기사 삭제/ 보도 금지	명예/ 신용	한국 석유공사	(주)코리아 타임스	인터넷 코리아 타임스	인용
4	2015나 2046025	서울 고법	2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초상/ 사생활	000	(주)조선 방송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인용
5	2014나 43078	서울 고법	2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000	(주)인터넷 한국일보 외 3명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인용

5) 최진봉, 위의 글.

6) “SNS 게시물, 이제 중재위가 알아서 삭제?”, 미디어스, 2016. 11. 9.

7) 문소영, “기사삭제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한국언론정보학보>, 2016년 통권 76호

번호	판결번호	법원	심급	청구명	침해 유형	원고	사건 피고명	매체명	결과
6	2015나 2060748	서울 고법	2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모욕/ 초상	000	(주)이엠디 외 1명	법무경찰 신문	인용
7	2015가합 101543	서울 남법	1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모욕	(주)문화 방송	(주)미디어 오늘 외 6명	인터넷 미디어 오늘	인용
8	2015나 2008030	서울 고법	2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모욕	사단법인 민주연론 시민연합	(주)채널 에이 외 1명	채널A/ 인터넷 채널A	인용
9	2015가합 11183	순천 지원	1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모욕	학교법인 청암학원 외 1명	(주)미디어 실크에이 치제이 외 1명	인터넷 미디어 워치/ 데일리 저널	인용
10	2015나 2046919	인천 지법	2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000	(주)천지 일보	뉴스천지	인용
11	2016다 207850	대법원	3심	손배/ 기사 삭제	명예	사회복지 법인 00 외 4명	(주)뉴스1 외 3명	뉴스1/ OBS/ 인터넷 OBS	인용
12	2015다 241303	대법원	3심	정정/ 손배/ 기사 삭제	명예	000	(주)세계 닷컴 외 7명	세계닷컴/ 세계일보/ TV조선/ MBN	인용

잘못된 인터넷 기사를 수정·보완하거나 삭제를 구하는 권리인 개정안의 침해배제청구권을 기사삭제에만 국한시키며,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을 “과거에는 적법했던 보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 마련”이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배제청구권은 단순히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라고 해서 과거 언론 보도를 삭제”하자는 것⁸⁾이 아니다. 명백히 잘못된 인터넷 기사의 경우, 원 보도를 고치자는 것이다. 즉, 실형을 받은 사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수감 중 무죄판결

8) 문소영, “기사삭제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한국언론정보학보>, 2016년 통권 76호

을 받았다면 원 보도를 보완하여 무죄판결 받은 사실을 덧붙이자는 취지이다.

침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오해는 기사삭제를 단지 스페인 곤잘레즈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구글 링크삭제’ 판결을 토대로 한 ‘잊혀질 권리’와 연관 짓는 데서 발생한다. 정보보호법상 잊혀질 권리는 원래 적법하게 제공되거나 생성된 정보의 삭제 내지 보완에 관한 것이지만 침해배제는 허위 또는 핵심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 또는 사후에 부정확하게 된 정보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위 사건에서 ECJ의 판단근거였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1995) 혹은 2018년 발효 예정인 일반 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모두 사이버상 떠도는 합법적인 개인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언론보도는 그것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보보호법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허위기사는 언론법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보보호법제상의 삭제, 정정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아울러 위 사건에서 ECJ는 언론사(스페인, Lavanguardia Ediciones SL)의 기사삭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바가 없다.

기사댓글은 인터넷의 기능적 상호작용성에서 기인한 미디어활동의 일부다. 하나의 기사에 수십, 수천 건의 댓글이 붙고 있는 온라인 기사게시판은 인터넷 양방향 구조가 새롭게 만든 거대한 ‘독자마당’인 셈이다. 댓글이 기사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기사의 신뢰도와 노출빈도에서 그렇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기사댓글은 정보통신망상의 단순한 정보가 아닌 광의의 미디어콘텐츠로서 언론중재법의 조정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뉴스포털 델피(Delfi)의 댓글 판결에서도 댓글이 게시자 개인들의 표현행위이지만 그것은 인터넷언론이 설정한 의제에 관해 독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델피의 저널리즘 활동의 일부였고, 이러한 UGC(user-generated content)도 공적 사이트에 게시되면 그 기사와 같은 파급력을 갖게 된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의 댓글을 제거하지 않은 사이트관리자는 게시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2008다53812)도 이와 같은 판시를 한 바 있다. 포털 등 사이트관리자의 당사자적격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CMA),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 등 국제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일부 언론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제도 도입과 운용에 대해 언론계의 진단과 상당히 다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재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랩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⁹⁾ 결과는 인터넷상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들의 피해구제책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준다.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해 수정·보완·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 10명 중 9명(89.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86.1% 이상은 잘못된 기사가 카페, 블로그 등에 전파된 복제기사나 기사에 달린 명예훼손적 댓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제기사나 기사댓글에 대한 일괄적 피해구제서비스를 중재위가 제공해야 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각각 84.6%, 90.6%가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현장 기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도 개정안에 대한 날선 시각의 비판적 논조의 기사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지난 2015년 중재위가 그 해 언론조정신청 사건 당사자인 언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언론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¹⁰⁾ 조사결과 피신청인 응답자의 58.6%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사의 수정·보완·삭제가 가능한 새로운 피해구제방법인 침해배제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신설 권리에 대한 언론인의 거부감이 예상보다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피신청인 응답자의 74.6%가 동의하였으나, 중재위 조정대상에 기사댓글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45.9%만이 찬성했다.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도 중재위에서 구제 받도록 하는 데에 신청인은 10명 중 8명(82%)이 찬성한 반면, 피신청인은 절반 정도만 찬성하여 양 당사자 간 온도차를 보였으나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30.4%)보다 찬성하는 의견(47.5%)이 훨씬 많았다.

9)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 $\pm 3.1\%$

10) 중재위는 해마다 중재위를 이용한 언론보도 피해자인 신청인과 언론사측 대리인으로 조정에 참석한 언론사 데스크 등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가. 실효적인 피해구제방안 제공과 언론보도 신뢰성 제고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국민들은 인터넷 언론에 대해 가장 실효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언론은 원 기사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이 언제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별도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매체에 한하여 원 기사를 수정해 줄 것을 중재위에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잘못된 언론보도가 계속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언론사 입장에서든 부분적인 사실관계의 잘못을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원 기사를 통해 바로잡는다면 언론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제33조의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중대하게”, “핵심영역”, “명백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침해배제청구권 행사의 남용을 막고,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비교 형량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자 함으로 이해된다.

나. 언론분쟁의 일괄적인 해소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개정안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피해에 대해 중재위를 통해 일괄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지만 침해배제청구라는 권리를 추가로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 기사를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원 기사가 이

미 인터넷 곳곳에 전파된 경우 해당 기사를 퍼 나른 게시물에 대해서도 원 기사가 정정보도 되었거나 수정,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더 이상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를 비난한 위법한 기사댓글에 대해서도 함께 중재위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창구에서 제반 분쟁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신문이 열정페이 운운하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성추행까지 했으며 편의점 전경 사진까지 보도하였다. 원보도와 이를 매개한 포털뉴스의 댓글란은 A씨를 비난하는 글로 넘쳐났으며, 블로그나 카페에 편의점 사진과 함께 이 기사를 퍼나른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고 포털 검색을 통해 상당수 기사게시물이 검색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 주장으로 편의점주의 잦은 욕설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①잘못된 인터넷신문 기사와 기사댓글 ②포털에 매개된 기사와 기사댓글 ③잘못된 기사를 퍼 나른 복제기사 ④검색으로 인한 게시물 노출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 시행 전후로 비교해 보자.

〈표 2〉 개정안 시행 전후 비교

피해유형	개정안 시행 전	개정안 시행 후
① 잘못된 인터넷신문 기사와 기사댓글	중재위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여 인터넷신문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다. 기사댓글은 조정대상이 아니었으나 조정과정에서 인터넷신문사가 기사댓글 삭제에 대해 협조해주기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잘못된 원 보도가 인터넷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구제가 불가능하였다.	중재위에 정정보도청구와 인터넷신문 보도인 만큼 침해배제청구를 하여 인터넷신문에 정정보도가 별도로 게재되고, 원 보도 내용도 수정하거나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삭제되었다. 또,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② 포털에 매개된 기사와 기사댓글	포털사를 상대로도 조정신청하여 포털에도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으나 기사댓글은 현행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포털사에 직접 신고해야 했다.	인터넷신문사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포털사가 매개한 기사는 수정, 삭제된 기사로 대체되었고 포털 뉴스 기사란의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은 삭제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져 근거 없는 비난 댓글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피해유형	개정안 시행 전	개정안 시행 후
③ 잘못된 기사를 퍼 나른 복제기사	중재위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블로그나 카페의 사이트 관리자에게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중재위에 해당 기사를 퍼 나른 카페나 블로그 등의 URL을 제시했더니 중재위에서 인터넷신문사와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직권조정안을 작성, 카페나 블로그의 사이트 관리자인 포털에 제시하여, 해당 기사를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④ 검색으로 인한 게시물 노출	인터넷신문사의 협조를 구해 검색사업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검색으로 인해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다고 중재위에 이야기했더니 인터넷신문사와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중재위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검색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다.

위의 표와 같이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는 현재 인터넷신문과 포털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욕설과 모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 등에 국한하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댓글은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과 관계된 댓글로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기사댓글의 인격권 침해여부는 중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사례와 같이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초래되는 파생 피해까지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오늘날 언론보도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눈과 귀로 전달되고 있다. 전통적인 지면과 전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뉴스플랫폼을 통해 자사 기사를 전달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 언론사 공식 계정을 가지고 있는 자사 기사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팟캐스트를 통해 전달하기도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뉴스편당이나 뉴스 큐레이션 등과 같이 뉴스의 형태가 새로이 진화되면서 기존 언론의 개념은 무의미해지고 그 경계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시도는 무력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뉴스의 생산주체가 대중화되고 전달 경로는 다원화되면서, 다종다양한 뉴

스플랫폼이 법적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인터넷신문의 기준을 취재·편집 인력의 상시 고용조항으로 정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¹¹⁾을 하면서 1인 미디어도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고, 게재 기사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면 취재편집 인력이 몇 명이건 관계없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취재·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언론의 기능을 지니고 역할을 한다면 1인 미디어도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도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개정안은 다양한 뉴스플랫폼과 새로운 유형의 기사형식, 전달방식 등의 등장을 고려하여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조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의 표현물까지 중재위가 삭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¹²⁾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SNS에 올린 개인의 일반적인 표현물이나 정치적 의사표현물은 중재위의 조정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인터넷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이다. 법적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데 굳이 중재위가 나서 조정을 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언론의 성격’을 지닌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정보’로 분류되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법적 언론의 지위를 지니지 않았으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언론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플랫폼을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구제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법적 언론의 지위를 지니지 못한 기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대상에 기사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보도’에 대해 사후 심의나 삭제가 심의를 통해 이루어

11) 헌법재판소, 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등 위헌 확인

12) “새누리당, 페이스북 게시물도 삭제할 수 있는 법안 냈다”, 미디어오늘, 2016. 11. 9. 페이스북 게시물까지 중재위가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지게 되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적 언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안이다.

5. 결론

인터넷기반 매체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정 등 보도문과 함께 원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어떤 법에도 원기사의 수정·삭제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허위보도로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최상의 구제책은 지난 오보를 정정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기사를 수정·삭제하는 것이다. 거기에 피해를 부추기는 악성댓글이나 퍼 나른 글까지 삭제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중재위를 통해 처리된 인터넷기반 매체의 기사삭제의 비중을 보면 2011년 36.5%를 비롯하여 매년 거의 20%를 넘고 있다. 이는 기사삭제가 현행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 이들 사건 1,635건 중 88.7%인 1,450건이 정정 등 여타의 구제 없이 기사삭제만 단독으로 이뤄졌다. 이는 조정과정에서 언론사와 신청인간의 입장이 고려된 결과로써 언론사는 정정보도 등의 흔적과 금전적 부담을 피하는 이점을, 신청인은 당장 문제의 기사가 사라진다는 일시적 만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기반 매체가 주류를 이루는 미디어환경에서 기사의 수정·삭제는 피해자가 원하는 주된 피해구제방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터넷기반 매체 중 인터넷신문만 보더라도 6천종이 넘어섰다. 기존의 전통매체들도 인터넷기반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이들 매체의 잘못된 보도에 달리는 댓글게시판은 거대한 독자마당이 되어 있고, 수많은 개별 블로그도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네이버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뉴스매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 아래 언론피해구제제도는 아직도 아날로그법제에 갇혀있다.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

할 자유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도의 보완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회가 입법미비상태의 해소를 위해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법치주의
실현의 요체다.

주 제 발 표

제2주제 :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문 소 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 청와대 등 정치권력과 부당한 공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이 될 것 -

문 소 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1. 기자는 왜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가

사례 1.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부른 사건이 있다. 2015년부터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¹⁾이라고 부른다. 출판사 박문각이 펴낸 《시사상식사전》²⁾에 따르면 “한국판 드레퓔스 사건으로 불린다.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복역했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18년 만인 2009년 이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약되어 있다.

같은 책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사건 초기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과 법원은 ‘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씨가 아닌 강씨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중략) 강씨는 2009년 9월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수사와 재판 결과는 잘못되

1) 앞으로 나오는 밑줄과 굵은 글씨체는 모두 필자 강조임

2) [네이버 지식백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174&cid=43667&categoryId=43667>

었다며 재심 청구했고, 당시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재심을 받아들였다. 검찰측인 서울고검 공판부(검찰)는 2009년 9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즉시 항고)했고, 대법원에서 18년 만에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최종 심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뤄오던 중, 2012년 10월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20일 재심이 이뤄진 후, 2013년 10월 10일 재심 과정에서 전대협 노트와 김기설씨의 평소 글씨에 대한 감정이 국과수에 의뢰되었고, 국과수는 두 달 뒤인 12월 11일 김기설씨의 필적이 맞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법은 1991년 제시된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2월 19일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마침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강기훈씨(51)에 대한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992년 당시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3년 만이다. 국가 권력과 지난하게 싸워온 강기훈씨는 현재 말기암 투병 중이다.

사례 2.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이 있다. 지난 2000년 8월 최모 씨(32)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다섯차례나 억울하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1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 재판장 노경필 판사는 2016년 11월 17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검찰은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씨(35)를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16년 11월 24일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와 최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최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증거를 재검토했고, 재심을 통해 실제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

은 최씨와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월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앞선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³⁾과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과 가족, 사건의 피해 유가족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이 잘못된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바뀐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사례 3. 지난 2007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관계를 폭로했다가 고법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해호씨(66) 등이 약 9년 만에 재심을 청구⁴⁾했다. 김씨 등은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 등을 들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개입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최씨와 박 대통령은 이들을 고발했고 두 사람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김씨가 최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 임송학 기자, 2016. 7. 8,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 벗겨지나,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결정”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8500150#csidxdb9e8a5fe7fa2b992daf5b375990957>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1999년 2월 6일 발생한 사건으로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털어 달아났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모 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다.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1999년 10월 22일 대법원은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최씨 등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까지 받고서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변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략) 3명 모두 수감생활을 마쳤고 사건 기록마저 폐기됐다. 16년이 지나 강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5일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내가 이 사건의 진범이다”는 이모씨(48.경남)의 양심선언도 나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2009년에 만료됐다. 이 사건은 재심 끝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4) 성도현 기자, 2016. 11. 23., “‘최순실·박근혜 관계 폭로’ 유죄판결 김해호씨, 재심 청구”,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2838851>

사례 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⁵⁾도 있다.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은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탈북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검찰은 2월에 기소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한 재북화교 출신으로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됐다. 결정적 단서는 유씨의 여동생이 ‘자백’⁶⁾ 한 것인데, 그녀는 4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회유, 협박을 당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했으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2013년 8월 열린 1심에서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된다.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고,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서는 무죄 선고했다.

검찰과 권력자들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것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등 30년 이상 걸리는 사건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한 두 건이 아니다. 가장 가깝게는 2014년 11월의 ‘십상시 문건 유출 사건’이 있다. 당시 이 보도를 한 세계일보의 사장과 편집국장이 교체되고, 관련보도를 한 기자들은 회사를 떠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왜 그렇게 됐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검찰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등이 검찰에게 그에 맞춰서 수사하도록 한 탓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중북’과 ‘빨갱이’로 낙인찍히는 순간, 국민이 투표로 뽑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과 소속 정당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진실은 이러하다”라고 주장하며 기사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해도, 청와대와 여당대표, 민정수석 등등이 명예훼손죄로 해당 기자와 소속 언론에 소송을 거는 일이 반복되면, 언론조직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례는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⁷⁾에도 잘 나와 있다. 2014년 6월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김기춘 당시 대통

5)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43&cid=43667&categoryId=43667>

6)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제작해 2016년 개봉한 영화 ‘자백’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간첩’을 조작하는 과정과 유씨 여동생의 발언들이 묘사돼 있다.

7) 하누리 기자, 2016. 11. 16., [TV조선 특종] “김기춘 ‘비판 언론에 불이익 주라’”. TV조선,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5/2016111590017.html

령 비서실장은 수석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으로 나온다. “일방적 지적, 비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등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 즉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제소**,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2014년 초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에 대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이후 철회했다.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의 비위를 상하는 보도를 하면 거액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언론이 어떻게 제대로 진실에 접근해 보도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위는 권력의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자협회보는 2013~2015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과 언론중재위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해 취재 보도한 내용을 보면, 11월 15일 현재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의 중재위 제소 건수가 11건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허현준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중재위에 청구한 것을 합치면 3~4건이 더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⁸⁾.

〈표 1〉 박근혜 정부 청와대 언론대상 주요 소송 현황⁹⁾

청와대 언론대상 주요 소송 현황(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언론사	기사제목	보도일자	고소인·원고	사건명	진행상황
시사저널	청와대 비서관, 대기업 인사 김숙이 개입했다	2013.08.06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	명예훼손 민·형사	변론보도문 신고 소 취하
국민일보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2013.10.04	김기춘 비서실장 등 2인	명예훼손 민사	소 취하
시사저널	[단독] 박지민 “경운회가 날 미행했다”	2014.03.23	김기춘 비서실장 등 4인	명예훼손 민사	언론중재위 조정제 따라 변론보도문 신고 소 취하
한겨레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2014.04.17	김기춘 비서실장 등 4인	명예훼손 민사	2심 원고 패소
CBS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2014.04.30	대통령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4인	명예훼손 민사	3심 원고 승소
시사인	사상 최대 대술 사기에, ‘그 이름’ 왜 잊을까	2014.06.09	곽상도 민정수석	명예훼손 민·형사	2심 원고 패소
세계일보	비리 혐의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	2014.07.08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	명예훼손 민·형사	언론중재위 조정제 따라 변론보도문 신고 소 취하
세계일보	[단독] 경운회 ‘국정 개입’은 사실	2014.11.28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인	명예훼손 형사	소 취하
동아일보	김기춘, 교체설 조사 직접 지시했다	2014.12.08	김기춘 비서실장	명예훼손 형사	소 취하
시사저널	[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2016.04.20	허현준 행정관	명예훼손 민·형사	1심 원고 패소
조선일보	넥슨 1000억원대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2016.07.18	우병우 민정수석	명예훼손 민·형사	진행 중
경향신문	우병우, 경운회 물려 변론 의혹	2016.07.19	우병우 민정수석	명예훼손 민·형사	진행 중

청와대 등 권력기관은 보수단체를 활용해 언론을 옥죄기도 한다. 2016년 결국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가토 전

8) 강아영·최승영 기자, 2016. 11. 22., “비판 보도에 고소·고발…청와대, 언론 상대 소송전쟁”,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0417>

9) 출처 : 한국기자협회보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가토에 대한 검찰수사 등이 외교문제로 부각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 입수한 태블릿 안의 연설문 등을 공개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2016년 10월 24일에 제기한 JTBC와 손석희 JTBC사장은 어버이연합에 고발당한 상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언론중재위를 활용한 조정 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진보 좌파 정부’로 이름이 난 노무현 정부 때도 조정 신청이나 소송이 많이 있었다. 주로 형사 소송보다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언론에 도입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민사소송을 많이 냈다. <표2 참조>

이와 관련해 자료를 찾아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내던 ‘청와대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2007년) 12월 27일자 2면 ‘盧·청와대 언론 소송, 한건도 승소 없어’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22건의 소송에서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8면 ‘노정권,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에서는 “소송 목적이 명예회복보다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¹⁰⁾라는 내용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기사인 ‘盧·청와대 언론 소송, 한건도 승소 없어’를 온라인판인 조선닷컴(www.chosun.com)에서 찾아보았다.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링크 삭제된 것이다. 그래서 PDF판으로 찾아보았다. PDF판에는 2면에는 기사가 없고, 8면에 ‘노정권,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는 기사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다시 온라인 조선닷컴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노정권,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은 손태규 단국대 교수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50년사(1957~2007)에 기고한 ‘노무현 정권의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¹¹⁾에 대한 글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날짜는 2007년 12월 27일자가 아니라, 2007년 4월 7일자 기사로 변경돼 있었다. 조선일보와 노무현 청와대가 으르렁 거리며 싸우던 기사는 다른 기사로 치환된 것이다. 이 글에서 손태규 교수는 “노무현 정부를 ‘언론중재위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집요하게 언론 견제수단으로 활용한 정권’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10) 홍보수석실, 2008. 1. 2.,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조선, <합법 가장한 언론탄압>에 대한 반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4&aid=0000000560>

11) 엄강수 기자, 2007. 4. 7., “노정권, 합법 가장해 교묘한 언론 통제”,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07/2007040700035.html

와 김대중 정부에서 5년간 각각 27건, 118건의 조정신청을 낸 반면, 2006년 8월 현재 589건으로 한 달에 14번꼴로 조정신청을 냈다고 했다.

〈표 2〉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언론대상 소송 현황¹²⁾

청와대의 언론 상대 소송 현황 민사소송					결과				
원고·당사 직위	대상 언론사	소송제기 일시/사유	보도일자·내용	승소	패소	강제 조정	취하	진행중	
문화상 비서실장	동아일보	2003.7.16/ 손해배상	김원기·문화상 등 굿모닝 돈 수수(2003.7.16)				○		
문재인 민정수석	동아일보	2003.7.21/ 정정보도	청와대 언론대책반 가동 (2003.6.18)		○				
문재인 민정수석	조선일보	2003.8.11/ 정정보도·손 해배상	청와대. 정보누설자 처리 고 심(2003.7.4)		○				
양인석 사법비서관	동아일보	2003.8.11/ 손해배상	胥. 김영완씨 도난채권거래 지 민원 무시(2003.7.1)				○		
박범계 민정2비서관	중앙일보	2003.8.11/ 손해배상	신계륜. 박범계비서관 경질 요구(2003.7.28)				○		
문재인 민정수석	월간중앙	2003.8.11/ 손해배상	민정수석 작성 인사파일 (2003.4)			○			
노무현 대통령	조선·중앙 ·동아·한 국일보	2003.8.12/ 손해배상	노 대통령 실질 소유 '창수 전' 특허의혹 등(2003.5)				○		
정만호 의전비서관	시사저널	2003.11.17/ 손해배상	청와대 '강원도의 힘' 작용 했다(2003.10.30)		○				
노 대통령	조선일보	2004.1.26/ 정정보도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 지만..."(2003.1.12)				○		
노 대통령	조선일보	2004.1.26/ 손해배상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 지만..."(2003.1.12)				○		
전기정 혁신 기획비서관	서울신문	2004.3.24/ 손해배상	청와대 '참여'가 '혁신'을 이겼다?(2004.3.3)			○			
전기정 혁신 기획비서관	국민일보	2004.3.24/ 손해배상	'청와대 다잡이' 나선 노대 통령(2004.3.3)				○		
장준영 사회 조정1비서관 의	주간동아	2004.6.11/ 정정보도·손 해배상	대통령비서관 급여·활동비 월 1000만원 넘어(2004.6.3)			○			
노 대통령	조선일보	2006.2.15/ 정정보도	조선만평: 거짓말 금세 들들 (2005.8.9)				○		
노 대통령	조선일보	2006.8.28/ 정정보도	조선만평: 거짓말 금세 들들 (2005.8.9)			○			
이백만 홍보수석	조선일보	2006.7.18/ 정정보도	"성장은 빈곤에 가장 좋은 해독제"(2006.3.10)				○		
대통령 비서실	조선일보	2006.12.27/ 정정보도	"정치권 386. 국정원에 압 력"(2006.10.28) 의		○				
대통령 비서실	문화일보	2006.12.27/ 정정보도	盧정권 '親北기조'와 '386 간첩단' (2006.10.27)		○				
박선원 통일 외교안보전략 비서관	동아일보	2007.1.25/ 정정보도·손 해배상	일심회 보고서 "靑비서관 수차례 등장" (2006.11.17)					○	
합계	19건			0	5	4	9	1	

형사 사건

고소인	대상언론사	보도내용·일자	결과
문재인 민정수석	월간중앙	민정수석 작성 인사파일(2003.4)	법원 무죄
대통령비서실	문화일보	국회에게 봉행무늬 특별제작(2003.8.6)	검찰 무혐의
황인성 시민사회비 서관	프린티어타임스	"청와대에 묵한 스파이가 침투했다" (2004.11.2)	검찰 무혐의

12) 출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50년사(1957~2007)에 기고한 손태규 단국대 교수의 '노무현 정권의 합법을 가
장한 언론탄압'

2.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기사삭제 청구권’(침해배제 청구권)에 대한 논의

가. 과거 기사 삭제의 필요성 제기

과거 기사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언론사들이 내부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기사 유통을 포털과 제휴해 노출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 언론의 기사가 포털 검색을 통해 열람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인한다(이재진·구본권, 2008). 현행 언론중재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보도가 된지 6개월이 지난 기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언론보도의 역사적 기록물로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색결과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달라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한다.

이재진과 구본권(2008)은 1999년 1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관행이 개선되고 사건 당사자의 실명 보도에 관한 기준이 엄격해 졌으나, 2000년 이전의 신문기사들에는 범죄 관련 보도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하던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진(2009)은 인터넷에 게재된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법체계상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며, 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언론사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6년 4월 한겨레신문은 독자권익위원회를 통해 과거기사 삭제 및 수정의 구체적 내부기준 마련했다. 기사를 수정·삭제해달라는 관련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해, 첫째 최종심(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거나 무혐의가 밝혀진 경우, 둘째 오보였을 때, 셋째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삭제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이재진·구본권, 2008). 이런 기준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오래됐다고 해서 관련자의 요구대로 기사를 삭제할 수는 없고, 신문은 날마다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판단에서 도출된 것이다(이재진·구본권, 2008).

개별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과거기사 삭제 및 수정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

여 집행하는 것이, 언론중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언론중재법을 통해 기사삭제 청구권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정훈(2013)은 인격권의 구조에서 잊힐 권리가 모든 이가 그들의 개인사를 다시 기록하거나 쓸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인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권리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개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판으로 합리적 비판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라고 해서, 과거 언론 보도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언론중재법 2015년 개정안과 ‘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분석

1) 2015년 10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정안¹³⁾(이하 ‘언중위 개정안’)

언론중재위는 2015년 10월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을 통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당시 개정안은

가) 언중위 개정안 제2조의15에서 ““언론보도”란 언론이 공공에게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했다. 이는 현행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에서 크게 나간 것으로 흔히 스트레이트 기사 등 ‘사실기사’에 관해 잘잘못을 따졌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문이나 방송의 논평이나 사설 등 ‘의견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가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나) 언중위 개정안은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인 제5조제2항을 삭제했다. 현행 이 항목은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중략) 언론 등은 그 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개정안에서 삭제된 이 항목이 중요한 이

13) 문소영·김민정(201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 151-182.의 내용 일부를 재인용했음

유는 형법 제311조는 ‘오로지’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결정¹⁴⁾한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회피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의 삭제는 문제가 있었다.

다) 언중위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7조 12항(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대해 피해받은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신생 매체인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뉴스와 논평 등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놓았다. 이는 제2조제15호에서 언론보도에 ‘논평’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의견기사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뉴스가 소비되는 상황을 살펴볼 때 우려할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라) 언중위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7조3(정보통신망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은 인격권을 물권으로 보고 방해배제청구권의 법리를 도입한 것이다. 제17조의3의 5개항이다.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을 밝힌 제1항은 “제1항1호가 보도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의 인격권 등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제1항제2호는 보도내용 자체로 보아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할 경우, 제1항제3호는 기타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그 밖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다.

제1항제1호의 허위보도의 경우는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통해 바로잡고 있다. 언론사에서는 이미 단순 사실의 오보로 판단된 기사는 바로잡아서 포털 등으로 재전송하고 있다. 문제는 당사자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언론사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법부의 판단 완료되기 이전에 언론중재위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서버)에 있는 기사를 삭제

14)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

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에서는 사생활 핵심영역을 ‘독일 판례에서 확립된 성적 영역 및 내밀 영역’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논의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를 제시해보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의혹보도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인가 아닌가? 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및 동영상 존재 의혹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인가 아닌가. ‘대통령의 7시간’은 논의대상인가 아닌가. 과연 이런 의혹은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한 행정기관인 언론중재위가 사법부에 앞서 판단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각 나라마다 인격권의 핵심이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독일의 판례처럼 좁은 기준을 택할지, 한국처럼 명예훼손 소송이 남발하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더 넓게 기준을 잡을지, 그 판단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판결 등으로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항제3호는 사전 보도금지(방해예방 금지)나 사후 기사삭제(방해제거청구) 역시 대법원의 결정(2003마1477결정)과 대법원의 선고(2012다60950 판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언론중재위는 자신들이 사전 금지가 아니라 사후 금지로 완화된 기준을 썼다고 한다. 즉 헌법 제21조2항의 검열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기사삭제의 경우 “예외로 오보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삭제청구권의 보호이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의 다툼 역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제4항의 단서조항 신설도 흥미롭다. 기사삭제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침해를 받은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현행 정정·반론보도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제14조에서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산술적으로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 신설 개정안은 기사삭제청구권을 보도한 시점이 아니라 ‘인지’한 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사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이다. 마치 검찰이나 경찰이 공소시효를 적용할 때 사건 발생시점이 아니라, 수사한 시점으로 잡는 것과 비슷하다. 현재 한국은 살인사건에 관해서

만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둔 ‘태완이법’을 두고 있다.

제17조의3의 제2항에서 위법한 보도를 퍼간 게시자들에 대해 기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확산방지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위축효과를 던져 줄 수밖에 없다. 이미 언론은 사실보도와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댓글이나 퍼간 게시물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다.

마) 또 언중위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8조의 2’는 인터넷상의 침해적 보도의 확산과 전파에 대한 대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미 정보통신망법 44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또한 문제적인 댓글방지는 언론중재위의 과도한 업무확장이라는 평가다. 또한 인터넷 댓글 등에 대한 규제는 현재 방통심의위에서 하고 있는 만큼 업무가 중첩된다.

2) 광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분석

(이하 ‘광상도 개정안’)

‘언중위 개정안’에 대해 문소영·김민정(2016)의 논문 ‘기사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와 신문협회보(제522호, 2016년 8월 31일자, 1~2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진행된 뒤 광상도 의원(새누리당)은 2016년 10월 28일 의원입법을 통해 일명 ‘기사삭제 청구권’이 포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언중위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광상도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중위 개정안’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제2조(정의) 제15호 언론보도에 대한 정의에 논평을 포함하지 않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2항은 삭제하지 않고 현상유지 했다.

가) 대신 광상도 개정안은 제1조(목적)과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에 검색서비스를 추가했다.

나) 광상도 개정안은 제2조제22호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3호와 제24호에서 검색서비스에 대해, 제25호에서 게시판에 대한 정의

를 신설했다.

다) 확산도 개정안은 제4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 특례를 신설하고, 제33조 제1항~제8항까지 신설했다. 이는 ‘언중위 개정안’ 신설조항인 제17조3와 역시 신설조항인 제18조2를 제33조제1항~제5항에서 포괄했으며, 신설조항 제7조제12항은 제33조6에서 포괄했다. 제33조의 신설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행 언론보도 ‘피해자’라고 지칭했던 단어를 ‘인격권 피해자’라고 변경해, 명분 쌓기와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신설조항인 ‘침해배제 청구권’을 ‘기사삭제 청구권’으로 쓸 때 더 공감이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관련 신설 법조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언중위 개정안’에 있는 내용과 같다.

3. 결론¹⁵⁾

각 문화권마다 ‘기록’과 ‘사생활’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기록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국의 문화에서는 잊힐 권리보다 기록할 권리, 사생활보다는 알권리가 더 중요하게 자리잡아온 전통이 있다. 유네스코 기록문화로 선정된 ‘조선왕조실록’의 존재를 생각해도 그렇다. 조선 태종이 사관에게 말에서 떨어진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발언까지 기록하는 치열함이 한국인의 피에는 흐른다고 봐야 한다. 왕조국가에서 지엄했던 왕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하기보다 후세에 기록을 남겨서 역사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언론 보도는 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현대에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기사삭제 청구권을 발동해 원래의 기사 자료를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오보’조차도 일단 공포되고 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구본권(2015.8월)은 ‘김일성 사망 오보’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사례를 들어 사회적 영향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요구한다고 해서 관련 ‘오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으로 흔적을

15) 문소영·김민정(201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 151-182.의 내용 일부를 재인용했음.

없애게 될 경우 ‘역사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또한 첫 보도는 ‘오보’였을 지라도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시일이 필요하고, 또한 각종 제보가 모여져 진실이 실체를 밝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뉴욕타임스>가 낱조오보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 뒤 ‘편집자 알림’ 등 관련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중재법의 ‘기사삭제권’ 신설의 법적 토대가 된 2013년 대법원 판결¹⁶⁾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미 기록된 언론의 기사를 인격권 침해로 문제 삼아서 기사 자체를 언론사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모두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즉 “기사(49건)을 삭제하고 미디어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해당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는 원심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삭제된 49건의 기사가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라는 전제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가 ‘기사삭제 청구권’을 제33조에 신설하기 위해 대법원의 해당 판례를 가져왔으나, 기사 삭제의 전제가 된 ‘허위보도’와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없는’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 판례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링크 삭제’의 판결이 나오기 1년 2개월 전인 2013년 3월에 나왔다. ‘잊힐 권리’로 그 출발이 시작됐으나, 유럽의 링크 삭제 도입과 한국의 기사 삭제 도입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크게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는 물론 공인들이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걸고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령을 활용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의혹에 대한 기사 삭제 요청이 언론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기사삭제 청구권’이 도입된다는 것은 염려스럽다.

한국은 링크삭제를 통해 잊힐 권리를 확립해나가는 유럽과도 법적 여건이 다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33조’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한국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및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

16)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황창근, 2015). 따라서 이진규(2014)가 지적하고 있듯이 “공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알권리와 더불어 그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권력의 불균형에 맞서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한국 같은 권위주의적 풍토에서 필요하다”(33쪽)고 하겠다.

언론중재위는 언론계를 모두 모아 ‘기사삭제 청구권’ 신설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사의 서버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언론이 확산되는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형성되지 않아 이른바 전통 미디어라 부르는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악전고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재산인 기사의 삭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쏟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언론중재위에서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또는 언론사의 최고경영진과 만나 이런 법안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디지털관련부서의 장을 불러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론중재위가 현재 ‘전통 미디어’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언론사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에서는 ‘기사삭제 청구권’이 포함된 제33조 신설과 관련해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신문사 등에서는 오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기사에 대해 뉴스소비가 구제요청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정하거나, 포털 등에서 링크삭제가 이루어져 검색되지 않는 등의 구제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언론사 서버에 있는 원래의 기사를 삭제하지는 않는다. ‘기록자’로서의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다. 현재 ‘오보’로 진단됐다고 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삭제 청구권’ 신설은 언론중재위가 언론사에 강제로 규율할 사항이 아니라, 현재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응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더불어 언론

중재위는 사법부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이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다툼이 있는 기사에 대해 행정지도로 손쉽게 해결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언론계는 공인의 인격권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해 잦은 논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적인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중재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언론중재위에서는 오히려 ‘공인’과 ‘공공의 이익’, ‘공인에 대한 알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까지 기사삭제 청구권을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도 초래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구본권(2015, 8월) “지정토론 I,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에 관하여”, <디지털 시대, 언론 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45~50.
- 김민정 (2015a). “실질적 잊힘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의 성격 및 의의”. <언론과 법>, 14권 1호, 219~248.
- 김민정 (2015b).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의 적용 기준에 관한 해외동향”. <언론중재>, 2015년 가을호, 110~120.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판결
- 문소영·김민정(201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 151~182.
- 박경신 (2015, 1, 5). “‘잊혀질 권리’ 법제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PD저널>.
- 박정훈 (2013).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 프라이버시”, <공법학연구>, 14권 2호, 569~60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 10.).

이승선 (2013).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KISO 저널>, 10호. URL: <http://journal.kiso.or.kr/?p=2365>

이승선 (2014).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 자유의 수위 제고 필요성”, <KISO 저널>, 14호. URL: <http://journal.kiso.or.kr/?p=4225>

이재진 (2009). “인터넷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정립”. <미디어 산업을 넘어 경쟁력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75~125.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재진 · 구분권 (2008). “인터넷 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171~212.

이진규 (2014). “포털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리”, <언론중재>, 2014년 가을호.

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마747 판결 (2013. 12. 26.)

황창근 (2015). “정보삭제권리(소위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 및 법제화의 한계”. 프라이버시 정책 연구 포럼. 정보삭제 권리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토 론

토 론 내 용

사 회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토 론 내 용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최근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개념과 전문직으로서의 기자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언론사의 위상과 영향력에 비견할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개인 매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간의 충돌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가 매개·확산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이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정신청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 공간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을 피해자가 일일이 캡처(Capture)하거나 URL을 수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조정·중재의 한계입니다. 만약 구글(Google)이나 페이스북(Facebook) 같은 해외사업자를 조정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렵다면, 자칫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검색 차단 기술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경우,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시스템에 의해 모든 해당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검색되는데, 그중 특정 기사만 검색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먼저, 검색 차단은 검색 결과에서 특정 URL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사업자 문제는 언론중재법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관련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외사업자들을 보면,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연락이 되지 않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재 교수님은 개정안대로 피해구제 절차를 따르더라도 개인 카페, 블로그, 댓글 등의 URL 수집이나 캡처를 개인이 일일이 하여 조정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 해외사업자의 조정 실효성 문제, 검색 차단 기술적 문제 등을 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김경환 변호사님은 검색 차단은 특정 URL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조치 가능하고 해외사업자 문제는 모든 법이 갖고 있는 문제로 별도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김경환 변호사님의 의견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 등 기존의 피해구제방법이 선형적 미디어에 맞추어져 있는 바,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중 신설된 기사삭제청구권(개정안 제33조제1항), 기사갱신청구권(개정안 제33조제2항), 검색배제청구권(개정안 제33조의2), 이 세 가지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제33조제1항은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3조제2항의 ‘사정변경에 따른 기사수정등청구권’은 제가 그간 ‘잊혀질 권리’의 대안으로 주장했던 ‘기사갱신청구권’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33조의2 ‘검색배제청구권’은 피해자가 검색사업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검색결과에서 배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즈 판결과 유사합니다. 다만 곤잘레즈 판결은 피해자의 신청에 대하여 검색사업자가 스스로 심사·판단하는 구조임에 반하여 개정안 제33조의2는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검색결과에 반영하도록 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33조의2는 검색사업자가 스스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EU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즈 판결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 판결을 근거로 검색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 점에서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점인 언론의 자유 침해나 알권리 침해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조항 중 대법원 판결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과 달리 개정안에는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중대성’만 적시되어 있고 ‘현저성’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침해가 중대하면 현저할 가능성이 큼이지만 판결 취지에 따라 ‘현저성’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언론사가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33조제1항을 보면 언론중재법 제5조제2항제2호(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준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사 삭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언론사 등이 항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3조제1항제2호에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판례는 ‘현재 침해가 명백하고 현저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문구를 판례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33조제1항제3호의 ‘계속성’ 및 ‘중대성’은 판례에 근거가 없습니다. 침해배제청구권은 기사삭제까지 이루어지는 청구권이므로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개정안에 기사삭제를 포함한 침해배제청구권이 담긴 한, 이 법안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의심을 차단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규제를 시도해 왔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터넷신문 등록 시 요구하던 취재·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시다만, 지난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이며, 인터넷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기타 건설적인 조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삭제청구권이 담겨 있는 한 시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사삭제는 불가하다고 보습시다만, 기사의 수정·보완의 경우, ‘인터넷 반론권’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수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이 법안에서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은 일반적인 인격권 피해가 아니고 특정 사업자가 이중스파이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보도로 인한 굉장히 중대하고 현저한 피해였기 때문에 기사삭제를 명한 것입니다.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문소영 부장님의 의견에 대한 반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권 침해를 다루었고 해당 기사를 허위보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의 침해행위가 인터넷상에서 지속되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과거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기사삭제는 침해행위를 제거하는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개정안 침해배제청구권의 취지 또한 ‘원본 기사의 삭제’가 아니라 ‘침해상태의 제거’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 판결에는 언론사 데이터 베이스에서 기사 원본 삭제를 명하지 않았고 개정안 역시 언론사 DB의 원본 기사삭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문소영 부장님의 발제내용 중 2015년에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광상도 의원 발의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발의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크게 제2조제15호 언론보도의 정의에 논평을 추가했던 부분, 제5조제2항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조항을 삭제했던 부분입니다.

이 두 조문이 광상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에는 언론보도의 정의를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논평, 사설은 언론보도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형식적인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언론보도 중 사실적 주장이 조정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논평, 사설 등도 전제되는 사실이 있으면 조정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언론보도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삭제하고자 한 이유는 각 청구권의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이 되지만, 신설되는 침해배제 청구권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격권의 구체적 유형별로 명문화가 필요했으나 입법 기술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판례 법리에 맞춰 적용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기사삭제청구 인용에 현재성, 중대성, 현저성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현재 중대하고 현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사삭제를 인용했다는 결과보다는,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를 삭제할 때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에 한해 기사삭제를 인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기사삭제청구권 도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제33조제2항의 기사수정보완 청구권은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반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터넷 기사를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독자들의 정보의 충족 측면이나 기사내용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단, 대법원이 삭제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현재성, 중대성, 현저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법 개정안에 명확성과 적절성,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점입니다. 법의 취지와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이 다르고, 각 조문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DB의 원본기사 및 허위가 아닌 사실 보도는 삭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 법조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의 정의에 논평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언론중재법 상 언론보도의 정의와 상충합니다.

두 번째, 적절성 문제입니다. 언론사의 기사는 사실이든 오보이든 역사적 사실로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삭제할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만 차단하면 족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여러 언론사에서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인 구제를 실시하

고 있는 바, 넓게 보면 행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삭제와 논평에 대한 조정·중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먼저 김경환 변호사님은 침해배제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와 개정안의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판결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이승선 교수님은 기사삭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으나 기사수정·보완 부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오근 본부장님은 대법원 판결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취지를 설명하시고 개정안이 언론사 DB의 원본 기사삭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짚어 주셨고, 문소영 부장님, 이승선 교수님은 기사삭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철수 부장님은 법조문과 이에 대한 해설이 상이한 점, 언론사 데이터베이스 기사삭제는 과도한 조치인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제33조제2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33조제1항 침해배제청구권에 관해서는 입장차가 커 의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33조의3 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대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한 조정·중재는 실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는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고 있는데, 임시조치가 매우 심각하다는 비판이 비등합니다. 댓글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면 댓글도 언론성을 띄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구제가 확정된 기사에 달린 댓글에 한하여 댓글 게시판을 관리하는 언론사 등과 피해자 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현재 온라인 공간의 댓글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승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가 허위이거나 위법적 내용을 담고 있고,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구제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댓글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재에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원 기사가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만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정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하며, 댓글 자체만으로는 조정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개정안에 의하면 기사에 달린 댓글만으로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언론보도 피해자가 댓글의 피해자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기사 댓글의 삭제 등은 먼저 허위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중대성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진실과 허위로 양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에 비교형량을 하게 되는데 이중 ‘중대성’은 표현의 자유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허위사실을 전제로 하여야만 댓글의 삭제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댓글에 대한 조치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

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자체적으로 댓글이나 기타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구가 댓글에 대해 조치하는 것보다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게시판을 관리하는 언론사 등을 댓글로 인한 피해의 조정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를 처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언론사에 댓글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중재법상의 조정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가 한 가지 첨언하자면, 현행 제도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댓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은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기사와 댓글 등 파생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제33조의3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는 지금까지 관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에 대한 조치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언론중재법에서는 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 댓글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절차에서는 댓글 작성자를 피신청인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댓글게시판을 운영하는 언론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차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리해보면,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해서는 대부분 토론자께서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문소영 부장은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권오근 본부장은 기사 댓글을 모두 모니터링 하자는 취지가 아니며,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는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승선 교수는 조정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구제가 확정된 기사에 달린 댓글에 한해 조정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경환 변호사는 댓글작성자가 아닌 언론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부분은 절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가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고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는 한, 피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다소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제33조의6을 보면,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의 논평 및 여론까지도 조정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 필요해보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사의 정의는 애매모호하고 지정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개념에 사실에 입각한 보도는 물론이고 사설, 논평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손질하고 논평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인터넷망을 전담하는 상설 중재부를 두어 공직선거 관련한 피해구제 역시 이 ‘인터넷 중재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논평과 관련하여,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의견 표명도 과도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언론중재법은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상충되는 부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부분인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의 정의와 피해구제절차 등은 IT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의 검색서비스의 정의에 의할 경우, 심지어 학교 인터넷 게시판까지도 조정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것은 진실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분이 훌륭하고 꼭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언론피해를 기사삭제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덧붙이자면, 언론사에서는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상관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기사삭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기사삭제 건수도 많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언론피해구제의 핵심은 원상회복입니다. 그러나 한번 엇질러진 물은 주워 담기 어렵듯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은 매우 어렵습니다. 언론피해를 당한 신청인들이 가장 원하는 바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그 보조수단으로써 기사삭제 및 검색 차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검색 차단과 함께 기사삭제를 구제방안으로 삼은 이유는, 검색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남아있으면 복제기사가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임철수 부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개정안에는 성적 교섭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보도에 한해서만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는 반드시 기사삭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침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한 기혼남성이 여성 직장동료와 산책하는 모습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꽃길 따라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 게재했습니다. 남성은 이를 본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각종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보도는 응당 삭제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

권오근 본부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 관련 보도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성우 (사회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언론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언론중재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9
----------	------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곽상도 · 유승민 · 박맹우
전희경 · 이종명 · 염동열
권성동 · 정태옥 · 김석기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피해구제수단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에 한정됨.

그런데 명백하게 거짓된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거짓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언론보도로 인한 제반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도 일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정함(안 제1조 및 제7조).
- 나.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함)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마. 제33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및 제33조의2에 따른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한 기사 댓글이나 조정·

중재·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권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검색사업자 및 사이트관리자는 제4장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33조의5 신설).

사. 중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의6 신설).

아. 제4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 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및 소송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의7 신설).

자.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안 제33조의8 신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를 “언론보도, 그 전파나 매개(媒介) 또는 검색서비스로”로 한다.

제2조에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3. “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24. “검색사업자”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5.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를 “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서비스(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구 등”을 “연구·상담 및 교육 등”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

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제33조에 따른 침해배제 청구를”로, “정정보도청구등이”를 “청구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정보도청구등”을 “청구 등”으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4장(제33조부터 제3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 특례

제33조(정보통신망에서의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 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② 언론보도등이 보도 전·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현저히 부정확한 것

으로 판명되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관련 언론사등에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2(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 ① 인격권피해자는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독자 등의 글, 음성, 영상, 그 밖의 메시지와 다른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정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의 조정신청 등) ① 제33조 및 제33조의2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인격권피해자 등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인격권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언론보도등에 관하여 독자 등의 댓글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을 상대로 인격권피해자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댓글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은 지체 없이 조정합의나 조정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댓글 게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격권피해자는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된 해당 보도의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복제·전파된 경우 그 복제·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 등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이하 “사이트관리자”라 한다)를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중재위원회는 제4항의 조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제·전파된 보도 내용이 게시된 사이트관리자에게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복제·전파된 해당 게시물의 삭제, 그 밖에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직권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이트관리자는 지체 없이 결정 등의 결과, 직권조정안 및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이의 신청 등) ① 인격권피해자와 제33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법한 침해적 댓글 또는 위법한 침해적 언론보도의 복제·전파 게시물의 게시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이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이미 내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의 이의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제3항의 기간 내에 제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의 있는 게시자는 사이트관리자가 제33조의3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안 날부터 7일 내에 이의 신청하거나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의5(언론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등) ① 언론사등, 검색사업자, 사이트관리자는 이 장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이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이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자율 규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은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사항에 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의6(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한 피해 구제) 중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 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장의 구제절차에 따른다.

제33조의7(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준용) ①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 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소송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의3의 규정은 조정절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33조의8(시행규칙)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배제청구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표, 게시 또는 전파된 언론보도등 및 그 복제된 기사, 댓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표, 게시 또는 전파된 언론보도등 및 그 복제된 기사, 댓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제4장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언론보도등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 및 그에 대한 댓글 또는 그와 동일한 위법한 복제·전파 게시물의 검색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u>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u>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 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 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 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 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언론보도, 그 전파나 매개</u> <u>(媒介) 또는 검색서비스로</u>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u><신설></u>	2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 <u>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u> <u>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 <u>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u> <u>한다.</u>
<u><신설></u>	23. “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망 <u>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u> <u>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u>

<신 설> <신 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u>보도 또는 매개</u>(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⑪ (생략) 제11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u>조사·연구</u>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u>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u> 24. “검색사업자”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5.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u>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서비스</u>(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 ----- ----- -----.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처) ① ----- ----- -----<u>연구·상담 및 교육</u> 등----- ----- -----.
---	--

② ~ ④ (생략)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신설>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제33조에 따른 침해배제 청구를-----

-----청구 등이-----

-----.

② -----청구 등-----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
도 피해에 대한 구제 특례
제33조(정보통신망에서의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② 언론보도등이 보도 전·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관련 언론사등

<신 설>

에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2(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 ① 인격권피해자는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독자 등의 글, 음성, 영상, 그 밖의 메시지와 다른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정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인격

<신 설>

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의 조정신청 등)

① 제33조 및 제33조의2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인격권피해자 등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인격권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언론보도등에 관하여 독자 등의 댓글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을 상대로 인격권피해자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

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댓글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은 지체 없이 조정합의나 조정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댓글 게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격권피해자는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된 해당 보도의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복제·전파된 경우 그 복제·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 등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이하 “사이트관리자”라 한다)를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중재위원회는 제4항의 조정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제·전파된 보도 내용이 게시된 사이트관리자에게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복제·전파된 해당 게시물의 삭제, 그 밖에 인격권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직권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이트관리자는 지체 없이 결정 등의 결과, 직권조정안 및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4(이의 신청 등) ① 인격

권피해자와 제33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법한 침해적 댓글 또는 위법한 침해적 언론보도의 복제·전파 게시물
의 게시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
조정안이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이미
내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을 취소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
복하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
권조정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
다.

④ 제1항의 이의 기간 내에 적
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

<신 설>

여 제3항의 기간 내에 제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의 있는 게시자는 사이트관리자가 제33조의3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안 날부터 7일 내에 이의 신청하거나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의5(언론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등) ① 언론사등, 검색사업자, 사이트관리자는 이 장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이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이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자율 규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은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신 설>

<신 설>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사항에
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의6(유사 뉴스서비스 전자
간행물에 의한 피해 구제) 중
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
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
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
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
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
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장의 구제절차에 따른다.

제33조의7(정보통신망을 통한 언
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절
차 준용) ①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소송
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의3의 규정은 조정절
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33조의8(시행규칙) 이 장의 시

<u>제4장</u> 벌칙	<u>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u> <u>제5장</u> 벌칙
----------------------	---

-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곽상도 국회의원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